

등록번호	구조과-6408
등록일자	2023. 9. 6.
결재일자	2023. 9. 6.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임	구조총괄계장	구조과장	119대응국장	차장	소방청장
					2023. 9. 6.
차태원	조태현	김학근	김조일	이일	남화영

펌프차구조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2023. 9.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

- 119안전센터의 구조기능 강화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2023. 9.



National Fire Agency 119

소 방 청
(구 조 과)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펌프차구조대 운영현황	2
1. 2022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	2
2. 2023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3
III. 예규 제정계획	5
1. 관련근거	5
2. 필 요 성	5
3. 주요내용	5
4. 추진계획	5
❖ 불임 1. 제정안	6

I. 추진 배경

- 現 1개 소방서 1개 구조대 운영으로 동시 다발적인 구조출동 상황 및 사고지점과 원거리인 상황에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가 요구됨

- 非 ^{농·어촌, 산간지역 등} 도시권 지역의 119구조대 관할구역이 넓은 경우 구조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119구조대와 원거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구조서비스가 취약한 안전센터에 구조 전문인력 및 장비를 배치한 펌프차구조대 운영으로 구조 대응능력 강화

- 「구급장비 구비 ^{소방청훈령(2019.2.1.제정)}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구급 분야 “펌블런스”는 고유 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펌프차구조대 관련 규정 미비 ※ 펌프차구조대 기본 운영계획 시행(매년)

- 펌프차구조대 편성·운영 사항 중 운영범위(업무범위 등), 운영인력(자격 등) 등이 시·도 본부, 소방서 간 상이하여 펌프구조대 ^{법적근거 미약} 운영에 제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3.7.28.)에 따라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에 펌프차구조대원 포함 *행정안전부 훈령 제298호

개정 前				개정 後 ※ (시행) '24. 1. 1.부터 지급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별표2] 업무추진비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구분	대	상	월 액	구분	대	상	월 액
구조구급 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 공무원	100,000	구조구급 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블런스·펌프 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에 따라 운영 규정 상 펌프차구조대 지정기준 및 지정대상자 명확화 필요, 지급 취지에 맞는 펌프구조대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강구

Ⅱ. 펌프차구조대 운영현황

1 2022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

□ 그간 추진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운영 개소	99개소	109개소	154개소	166개소
운영 기준	119구조대와 20km 이상 떨어진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119구조대와 15분 이상 떨어진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119구조대와 15분 이상 또는 12km 이상 떨어진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좌동
운영 인력	구조대원 자격자	인명구조사, 구조대 유경험자(2년 이상)	인명구조사, 구조대 유경험자 (2년이상), 안전센터 근무 (2년이상) 구조교육수료자	인명구조사, 구조대 유경험자 (3년이상), 안전센터 근무 (2년이상) 구조교육수료자

□ 2022년 운영실적

○ (기간/대상) '22.1.1.~'22.12.31.(1년간) / 안전센터 및 지역대 154개소*

* 14개 시·도 / 104개 소방서 / 154개소 펌프차구조대 운영(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 (운영실적) 총 27,944건의 구조건수, 총 5,236명 인명구조

- 펌프차구조대가 운영되는 104개 소방서 전체 출동의 약 15%, 구조
건수의 약 17%, 구조인원의 약 16%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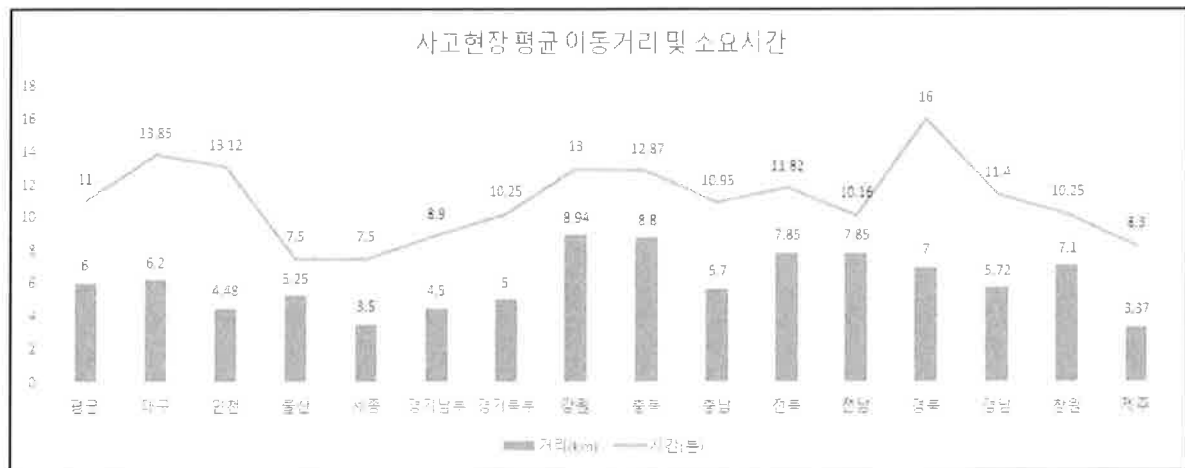
분류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본서 기준 (104개 소방서)	248,975건	162,374건	33,480명
펌프차구조대 기준 (154개 센터)	37,132건(14.9%)	27,944건(17.2%)	5,236명(15.6%)

- 펌프차구조대 구조출동 27,944건 중 8,244건(약 30%)을 본서 구조대
도착 전 펌프구조대에서 자체 처리함

⇒ 그중 펌프차구조대 운영의 주목적인 교통·수난·산악사고 자체처리
비율은 33.77% 임

구분	계	화재	폭발	붕괴	교통	수난	산악	끼임	승강기	인명 간힘	추락	누출	테러	항공기	자살 기도	기타
건	8,244	1,880	15	85	2,227	254	303	126	459	379	142	44	1	-	674	1,655
비율 (%)	100	22.80	0.18	1.03	27.01	3.08	3.68	1.53	5.57	4.60	1.72	0.53	0.01	-	8.18	20.08

- (운영효과) 안전센터 내 구조대응 능력이 강화된 펌프차구조대 운영으로
본서 구조대 현장도착 전 신속한 초기대응 가능, 구조 골든타임 확보
- 펌프차구조대 평균 사고현장 도착시간은 11분, 평균 현장출동 거리는
15분 or 12km 이상 소요
6km 로 펌프차구조대 운영기준 보다 시간·거리상 단축되어 선제적
구조활동 가능



2 2023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 2023년 운영계획

< '22년 → '23년 달라지는 점 >

- 자격기준 : 구조전문인력 경력 기준 강화(구조대 근무경력 3년 이상)
- 장비기준 : 필수 13종, 선택11종 → 필수 13종, 선택16종*
 - * 산악구조장비 보강(5종) : 등강기, 하강기, 다중확보기, 도르래, 산악용 들것 추가
- 중복지정 : 펌프차구조대, 생활안전대, 펌블런스 → 펌프차구조대*, 펌블런스
 - * 펌프구조대 업무에 생활안전출동이 포함되어 펌프구조대 운영하는 안전센터는 생활안전대 지정 해제 권고

○ **(운영기준)** 본서 구조대 도착까지 15분 or 12km 이상 소요되는 안전 센터 및 지역대 내 운영

- 본서 구조대(일반구조대)와 물리적 거리가 가깝더라도, 특수재난 (화학, 산악, 수난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문 펌프구조대 운영 가능

○ **(운영현황)** 총 166개대 운영 *'22년도 대비 12개대 추가 운영

구분	계 (개소)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남부	북부									
'23년	166	2	8	2	9	20	8	19	15	15	14	6	14	24	4	6
'22년	154	2	8	2	9	20	8	19	15	15	11	6	14	15	4	6

○ **(운영인력)** 구조 전문인력* or 안전센터 근무자 팀별 1명 이상

* 구조 전문인력 : 구조대 경력 3년 이상, 인명구조사, 구조교육 수료자

- 1순위 : 구조 전문인력 팀별 1명 이상 배치 권고
- 2순위 :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 2년 이상 근무자

○ **(운영장비)** 기본 필수장비(13종)와 지역특성 및 사고유형을 고려한 선택장비(16종) 보강 실시

- 교통·수난사고에 사용하는 장비 100% 배치 추진

구분	중량물작업용					수난구조용			절단구조용		보호장비	
	유압 및 배터리식			휴대용 원치	에어백 세트	구명 조끼	구명 부환	구조 로프	동력 절단기	체인톱	구조 장갑	구조 헬멧
	전개기	절단기	램									
배치 개소	137	124	112	76	117	151	152	78	151	149	125	127
배치율 (%)	89.0	80.5	72.7	49.4	76.0	98.1	98.7	50.6	98.1	96.8	81.2	82.5

○ **(교육훈련)** 분기별 1회 이상 본서 구조대와 합동훈련 실시, 월별 빈번한 사고 발생시기 도래 전 사고유형별 자체훈련 실시

- 「펌프차구조대 운영 규정」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긴급상황 대비 신속한 대응력 구축을 통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필요

Ⅲ. 예규 제정계획

□ 관련근거

- 「119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119법 시행령」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필요성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에 따라 지급 취지에 맞는 펌프차구조대 운영 기준 명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23.7.28.)
- 구급분야 “펌블런스”는 고유 특성에 맞게 ^{소방청예규 제76호(2023.3.9.제정)}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펌프차구조대 관련규정 미비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정 목적 및 펌프차구조대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편성 및 운영) 관할 안전센터 지리적·환경적 여건, 소방력 기동성, 출동수요 등을 고려하여 펌프차구조대 지정, 정원, 계획수립 등을 소방본부장 등이 편성·운영(안 제4조)
- (대원의 자격기준)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따라 펌프차구조대원 지정을 위한 최소 자격기준 정립(안 제5조)
- (장비 보유기준) 구조장비 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수·선택 장비로 구분, 펌프차구조대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명시(안 제6조)
- (교육훈련/기록관리) 일반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전문구조대원 수준의 구조역량 강화, 구조활동 일지에 따라 펌프차구조대 활동사항을 기록 및 보관으로 실적 관리와 책임성 확대(안 제8조 및 제9조)

□ 향후계획 * 2024. 1. 1. (시행목표)



소방청 예규 제 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00월 0일

소방청장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119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법률 제18487호) 등에 따라 구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펌프차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차구조대의 계획수립, 편성 및 운영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펌프차구조대 용어정의, 구조대 지정, 정원,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조대원 자격 및 장비, 출동구역, 업무(안 제5조부터 제8조)

구조대원 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장비 보유기준, 출동구역,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교육훈련 및 대원안전관리, 활동비지급, 지도점검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법」 제3조 및 제8조, 「119법 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